소방청 공고 제2026-181호

2026년 하반기 소방공무원(항공분야) 채용시험 공고

2026년 하반기 소방공무원(항공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소 방 청 장

1. 채용예정인원 (5개 시도, 7명)

구분	계	항공					
		조종			정비		
		소계	남성	양성	소계	남성	양성
계	**7**	**5**	**5**	**0**	**2**	**2**	**0**
인천	1	**1**	1	-	-	-	-
울산	1	-	-	-	**1**	1	-
강원	2	**2**	2	-	-	-	-
경북	2	**2**	2	-	-	-	-
제주	1	-	-	-	**1**	1	-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 계급: 조종(소방위), 정비(소방장)

1)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2)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은 **시도 소방본부**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일정 변경사항은 **소방청 누리집 및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을 통하여 재공고합니다.

2. 시험일정

시험단계	시험절차	채용분야	시험공고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시험공고: '26. 9. 21.(월)					
원서접수: **'26. 10. 6.(화). 10:00 ~ 10. 12.(월). 18:00**					
1차	**서류전형**		-	**10. 27.(화) 한**	10. 28.(수)
2차	**실기시험**	조종	10. 28.(수)	**11. 10.(화) ~ 11. 20.(금)** **※ 기간 중 시행(별도공지)**	11. 26.(목)
		정비			
3차	종합적성검사(공통)		11. 26.(목)	**12. 3.(목)**	-
	면접시험	조종		**12. 10.(목)~ 11.(금)** **※ 기간 중 시행(별도공지)**	12. 24.(목)
		정비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6. 10. 6.(화). 10:00 ~ 10. 12.(월). 18:00

나. (**접수방법**)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https://gongmuwon.gosi.kr)**

1)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2)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응시지역과 응시분야는 중복접수가 불가함**

3)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4)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수수료를 결제(납부) 해야 접수가 완료됨

※ 시스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원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 내용 변경 가능, 최종제출 완료하거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불가

5)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시험단계마다 신분증, 응시표,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소지할 것

※ 인적사항 변동 완료자는 면접시험일부터 최종합격일 기간에 증빙자료 제출

6) **응시번호는 '26. 10. 19.(월) 10:00부터 확인 가능**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625호 교육훈련담당관 원서접수 담당자 앞 (우 30128)

다. (**원서접수 취소**) 원서접수 기간 중 취소 가능

※ 추가 접수 취소 기간: **'26. 10. 21.(수) 10:00 ~ 10. 24.(토) 18:00**

라. (**응시수수료**) 소방위·장 7천 원

4. 시험절차 및 합격자 결정

1 1차 시험: 서류전형

가. 임용예정 직위별로 소극적 서류전형으로 시행

나. (제출기간) '26. 10. 6.(화). 10:00 ~ 10. 12.(금). 18:00

다. (제출방법)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을 통한 제출

※ 원서접수시 서류제출

라. 응시자격요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구비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전화상담(☎ 044-205-7286) 후 서류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분야	구비서류
공통	①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1부 ※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사업주 포함)에 한하며 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함**(폐업회사의 근무경력자 포함)** 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다)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라)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1부 ③ 임용사항, 근무경력, 징계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군부대 경력증명서 또는 자력표 1부 **(군 경력자에 한함)** ④ 이력서**(별지 제1호서식/한글파일 및 PDF 각각 첨부)**
조종사	①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서 사본 1부 ② 경력(재직)증명서 1부**(경력중 군경력이 있는 경우 공통 3번 포함 제출)** ③ 비행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최종 비행시간이 명시된 발행본) 1부 ④ 계기비행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⑤ 항공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사본 1부
정비사	①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서 1부 ② 헬리콥터 정비 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발행본) 1부

☑ 경력증명 제출 시 포함될 서류

▸ 제출서류로 경력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시 다음 공적 서류를 첨부해야 함

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확인서(회사 자체 서식 외 담당업무 기재 필요시 사용)

② 급여계좌내역(계약직경력자에 한함 / 근무기간 기준), 갑근세증명서

③ 근로계약서(계약직경력자에 한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명시)

※ ①, ②, ③번은 본인의 근무경력 기간 모두 나오도록 발급

※ ③번은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만 제출

마. 해산·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면 근무경력사실 확인서와 사실증명(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을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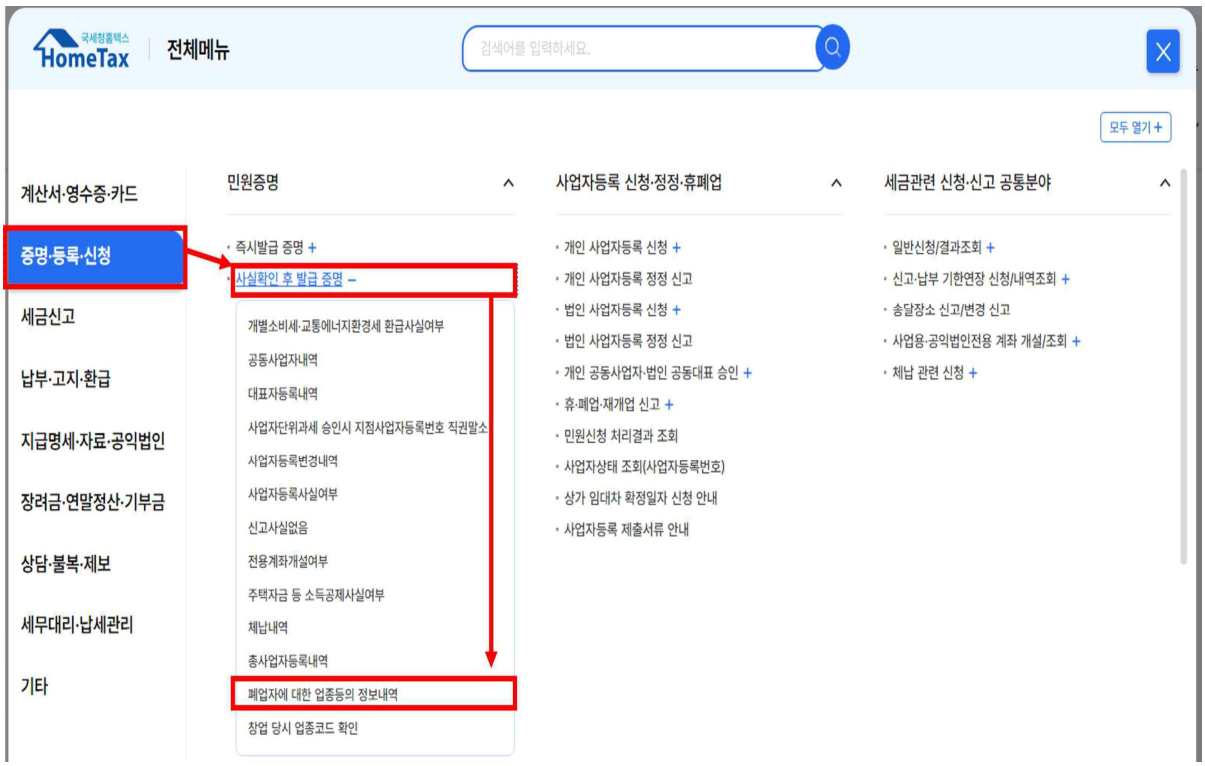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2 2차 시험: 실기시험

가. (**시험일자**) ’26. 11. 10.(화) ~ 11. 20.(금) 기간 중 ※ 별도공지

나. (**시험방법**) 조종사 – 모의비행, 정비사 – 구술시험

다. (**시험대상**)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라. (**시험기준**) 당해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평정표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평정하고 점수 부여

채용분야	실기시험 평정항목
조종사 (모의비행 10개 항목)	① 이륙 상승 및 선회 ② 강하 및 선회 ③ 헬기장 접근 ④ 구조·구급 임무 ⑤ 화재진압 임무 ⑥ 자세회복 ⑦ 계기비행 전환 ⑧ 무선교신 절차 ⑨ CRM(승무원 자원관리) ⑩ 비상절차
정비사 (구술 10개 항목)	① 기체계통 ②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③ 연료 및 윤활계통 ④ 회전익 계통 ⑤ 유압 및 조종계통, ⑥ 전기·전자·통신·계기 ⑦ 항공안전법 및 정비행정 ⑧ 영어능력평가 ⑨ 탑승정비사의 CRM 및 항공안전관리 ⑩ 탑승정비사의 역할

※ 항공분야 실기시험 표준서를 참고

마. (**합격기준**) 평정항목별 40퍼센트 이상, 전 평정항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3 3차 시험: 면접시험

Ⅰ 종합적성검사

가. (**시험일자**) ’26. 12. 3.(목)

나. (**시험공고**) ’26. 11. 26.(목) 14:00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등

다. (**검사대상**) 실기시험 합격자

※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사전 제공되며, 면접시험 평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종합적성검사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응시 불가

▌면접시험

가. (**시험일자**) '26. 12. 10.(목) ~ 11.(금)

나. (**시험대상**) 실기합격자 중 종합적성검사 응시자

다. (**시험방법**) 항공분야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사전조사서 작성 등 면접시험 공고시 별도 안내 예정)

※ 면접시험의 평정 요소

구분	평정요소 (5개 분야 50점)	평정점수				
발표면접	① 문제해결능력(10점)	10	8	6	4	2
	② 의사소통능력(10점)	10	8	6	4	2
인성면접	③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10점)	10	8	6	4	2
	④ 팀워크 및 협업능력(10점)	10	8	6	4	2
	⑤ 침착성 및 책임감(10점)	10	8	6	4	2

마.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별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함.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4 합격자 결정

가. (**최종합격자 결정**)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아래 표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자리에서 절사>)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채용분야	시험종류	적용비율	비고
경채	실기+면접시험	실기 75%+면접 25%	항공분야

나. (추가 합격자 결정)

1)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 (합격증명서 발급)

1) 발급방법: 합격자 발표 이후 희망자(수수료 없음)

2) 신청방법: 정부24(plus.gov.kr) → 민원서비스 → 민원찾기(검색어 입력: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 발급) → 발급하기

5.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구분	종류	응시자격 등 기준일
공통	응시 결격사유[1]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026. 12. 11.)
	운전면허[2]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026. 12. 11.)
경채	응시연령	2026년도 기준(다. 응시연령 참고)
	경력요건의 자격・면허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026. 12. 11.)
	경력요건의 경력(근무)기간 산정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026. 12. 11.)

1) 응시 결격사유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2) (항공분야 중 정비만 해당)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 운전면허(증) 효력은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되면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합격 결정이 취소됨
3) 모든 자격(면허)은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나. 응시 결격사유 등

1)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④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2) 복수국적자 임용

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③ 「국적법」 제11조의2제2항(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임용 전** 또는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 시험에 응시한 시도 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함(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다. 응시연령

분야별		계급	연령	생년월일
항공분야	조종	소방위	18세 이상 45세 이하	1980. 1. 1. ~ 2008. 12. 31.
	정비	소방장	18세 이상 40세 이하	1985. 1. 1. ~ 2008. 12. 31.

▷ **다음의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제74조의2에 따라 복무를 마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의2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 **「병역법」,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아 복무 중인 사람(현역) 중 "임용유예"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는 해당 시·도 임용예정일 또는 교육입교 예정일 전까지 전역이 가능해야 하며, 전역불가 시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임용예정일 및 교육입교 예정일은 해당 시·도에 문의 필요)**

라. 운전면허 요건

1) **항공정비** 응시자는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로

2) **최종시험일까지 보유**해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마. 채용시험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4명 이상 선발 단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없음

바. 채용분야별 담당업무

채용분야	주요업무
항공 **(조종사)**	• 소방 헬리콥터를 활용한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 대형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산불화재 및 특수화재 항공 진압 • 소방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등 •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항공 **(정비사)**	• 소방 헬리콥터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 헬리콥터 탑승비행 및 정비 • 소방 헬리콥터 자재 관리 및 정비계획 작성 • 인명구조 작업을 위한 호이스트 작동 및 구조 활동 지원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헬리콥터 조종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헬리콥터 조종	소방위	5명

임용예정기관명
인천, 강원, 경북

주요업무	○ 소방 헬리콥터를 활용한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 대형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산불화재 및 특수화재 항공 진압 ○ 소방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등 ○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비행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사고

필요지식	○ 항공안전 및 인명구조, 구급이송, 화재진압 등 임무형태별 운항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소방 헬리콥터의 특수성 및 항공통신 표준운영 절차 ○ 주요지역, 비행제한지역, 방공식별 구역 비행절차

응시자격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헬리콥터 조종 분야	
	자격 및 경력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 소지 및 2년 이상의 조종경력(해당 자격증 소지하기 전의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 ② 헬리콥터 조종경력을 총 1,000시간 이상 보유한 사람(모의비행 시간 제외)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③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④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 사람 ♦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 사람이란? - 계기비행은 실제비행과 모의계기비행으로 구분(비행경력증명서) - 계기비행 중 실제비행이 40시간 이상이면 충족 - 계기비행 중 실제비행과 모의계기비행시간을 합하여 40시간 이상이면 충족 단 모의계기비행시간은 20시간 이내만 합산가능 예) 실제비행20시간 + 모의계기비행 20시간 = 40시간으로 충족 실제비행15시간 + 모의계기비행 25시간 = 35시간으로 미충족 ※ 계기비행 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우대요건	○ 해당 사항 없음	
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헬리콥터 정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헬리콥터 정비	소방장	2명

임용예정기관명
울산, 제주

주요업무	○ 소방 헬리콥터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 헬리콥터 탑승비행 및 정비 ○ 소방 헬리콥터 자재 관리 및 정비계획 작성 ○ 인명구조 작업을 위한 호이스트 작동 및 구조 활동 지원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사고

필요지식	○ 기술역량(기체계통,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연료 및 윤활계통) ○ 회전익 계통, 유압 및 조정 계통, 전기·전자·통신·계기 ○ 관리역량(항공안전법 및 정비행정, 영어능력평가) ○ 임무역량(탑승정비사의 CRM 및 항공안전 지식 정도, 역할 등)

응시자격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헬리콥터 정비 분야	
	자격 및 경력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항공안전법」제35조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헬리콥터) 소지 및 7년 이상의 헬리콥터 정비 실무경력(해당 자격증 소지하기 전의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라 최근(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 경험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 해당 사항 없음	
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공통>

① '응시자격요건(자격 및 경력)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응시 가능

②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6.12.11.)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①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함(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❶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담당업무 미기재, 채용 분야와 연관성이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담당업무를 기술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❷ **비정규직**의 경우 관련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❸ 경력증명서 제출 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기재(각종 증명서류 미제출 시 관련 업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필수 제출)

❹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예외) **발행분**을 제출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❺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경력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시간제 근무 또는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근무경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람만 인정

❶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 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실적, 수입 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❷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에서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③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 폐업회사의 경우 다음의 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❶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❷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❸ 소득금액증명원, ❹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제출 필수(❶, ❷, ❸, ❹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total.k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ei.go.kr)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②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을 받은 한국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 자격증(면허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함

6. 근거법령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등

7.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거나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까지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합니다.

아.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서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기재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최종합격자가 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지정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취소)

8.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최종합격자 발표 후 10일 내)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림.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됨

다. 「국가공무원법」제45조의2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할 수 있음

마. 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바람

1) 시험일정: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8)

2) 서류제출: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6)

3) 임용예정 및 교육 입교 예정:

시도별	전화번호	주소
인천 소방행정과	032-870-301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https://www.incheon.go.kr/119/index)
울산 소방행정과	052-229-4523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2별관 3층 소방행정과 (https://fire.ulsan.go.kr/)
강원 소방행정과	033-249-510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신관1층 (https://fire.gwd.go.kr/fire/partici/parti_recruitment)
경북 소방행정과	054-880-6155 054-880-6152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exam_info/index.html)
제주 소방정책과	064-710-35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9길 22 (http://www.jeju.go.kr/119/notice/exam.htm)

※ 문의전화: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알아두기 **신체검사 관련 안내문**

중요!!! ☞ '26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시험 방법 및 시험 단계가 변경됩니다.

- 신체검사를 시험단계에서 제외하고 최종시험합격자(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에 대해 **채용후보자 등재 시에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서류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조종분야는 항공신체검사증명

가. 소방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채용후보자 등록시 정해진 등록기간(임용 시도 마다 기간이 다를수 있음)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검사서류는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조종분야 최종합격자는 임용(8월 중순 예정) 전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제출해야 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미제출하거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등 효력이 상실된 경우는 합격이 취소되니, 갱신검사 등을 통해 유효한 항공신체검사 증명 준비 필요

※ 정비분야 합격자는 개정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마약 6종 포함)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다. 신체검사자를 받을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반명함판(3cm×4cm) 컬러사진 1~2매(병원마다 다름), 신체검사 수수료(병원마다 다름)를 준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한 신체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력, 혈압, 시력은 반드시 수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마.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지정병원의 압인, 계인 처리, 담당의사 서명(인), 지정병원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등의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 신체검사서 제출 방법 등은 채용후보자 등록 관련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이력서(소방위 헬리콥터 조종)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응시분야	소방위 헬리콥터 조종	성 명	

나. 응시자격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예정)일	자격번호	검정기관
	회전익 조종사 육상다발	yy-mm-dd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자전파통신기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전파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계기비행자격증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종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yy-mm-dd~yy-mm-dd		

비행경력	조종시간 (모의비행시간은 제외)	계기비행시간		다발 헬기 조종시간(조종시간에 포함)	
		실제	모의	항공기형식(기종)	조종시간

※ 작성 유의사항

1) 이력서와 제출하신 서류를 기초로 서류전형이 진행되며, 이력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정하지 않습니다.
2) 자 격 증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합니다.
3) 조종경력: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기재란 부족 시 셀을 나누어 기재 바랍니다.
4) 비행경력: 제출한 비행경력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기재란 부족 시 셀을 나누어 기재 바랍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이력서(소방장 헬리콥터 정비)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응시분야	소방장 헬리콥터 정비	성 명	

나. 응시자격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예정)일	자격번호	검정기관
	항공정비사 (헬리콥터)	yy-mm-dd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비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yy-mm-dd~yy-mm-dd		

※ 작성 유의사항

1) 이력서와 제출하신 서류를 기초로 서류전형이 진행되며, 이력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정하지 않습니다.
2) 정비경력은 항공정비사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 가능합니다.
3) 군경력의 경우 군사특기로 지정된 전체 복무기간이 아닌, 헬리콥터 정비 실무경력에 해당하는 기간(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처와 직무가 확인 가능해야 함)을 기재 바랍니다.
4) 기재란 부족 시 셀을 나누어 기재 바랍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붙임 1】

근무경력 사실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이 사실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 경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 . . ~ . . . (년 월)	

입증인(1)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

입증인(2)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

붙임: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부

소방청장 귀하

【붙임 2】

(앞 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4㎝)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 명	생년월일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혈 압					
시력	맨눈	좌: 우:	색 신 (색 각)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교정	좌: 우: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흡기질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화기질환					피 부 질 환					
순환기질환					정 신 질 환					
비뇨기질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약 물 검 사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합 격 여 부	[ ] 합 격 [ ] 불 합 격 [ ] 판 정 보 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별표 7에 의하여야 합니다.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1 응시 결격사유, 복수 국적자의 임용 및 시험의 정지, 무효 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참고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 3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

□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는 '서류전형'에 대한 유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응시자는 서류제출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응시서류의 제출등)

○ **'근무경력'**이라 함은 단지 해당 경력과 관련된 기업·직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 예정 직렬 및 직류와 같은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휴직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 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육아·질병에 의한 휴직 등(병가 및 군인의 국군병원 입원 기간 포함)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은 응시요건 기간의 10% 범위 내에서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등)가 명확히 기재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를 포함**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근무형태 기재가 불가한 경우 '경력 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 제출한 경력 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인정은 '일근 주 40시간' 또는 '교대 근무 주 평균 30시간'을 기준으로 함.**

(가)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 근무형태인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예) 주40시간 근무형태로 2년간 근무: 2년 인정

(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 근무형태인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
예) 주20시간 근무형태로 2년간 근무: 1년 인정

(다) **교대 근무자**(당번 또는 야간근무를 포함)의 경우 **주 평균 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예) 교대 근무자로서 주 평균 근무시간이 30시간으로 2년간 근무 : 2년 인정

(라) **교대 근무자**(당번 또는 야간근무를 포함)의 경우 **주 평균 근무시간이 30미만인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
예) 교대 근무자로서 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으로 2년간 근무 : 1년 인정

(마)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때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경력 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함. ※「민법」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 공공경력요건으로 응시할 때에는 법인, 민간단체(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

※ 법인 여부 확인: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열람

- 다만,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참고 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1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수치로 기재)**
색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수치로 기재)**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수치로 기재)**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참고 4-1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별표7

구 분	내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구 분	내용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구 분	내용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12. 귀	가.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는 제외)인 경우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참고 5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 신체검사 지정병원: 83개소

연번	병 원 명	시도	주 소	전화번호	검사 가능 시기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신내동), 2층 건강증진센터	02-2276-7000 (내선 2)	26년3월
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15층 국가검진센터	1577-0075	26년5월
3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을지로 6가), 별관 3층 건강검진센터	02-2260-7432	26년4월
4	경찰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가락동), 3층 건강증진센터 종합검진센터	02-3400-1801~2	26년2월
5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아미동1가)	051-240-7830	26년2월
6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491	26년2월
7	부산보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주례동)	051-601-6141	26년2월
8	좋은강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80(남천동)	051-610-9865	26년2월
9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시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2가)	053)200-5791	즉시
10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학정동)	053-200-2172	즉시
11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신당동)	1577-6622 053-258-6813	즉시
1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대명동)	1688-0077	26년2월
13	대구의료원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중리동)	053-560-7387	즉시
14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대명동)	053-620-3180	26년2월
15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020	즉시
1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동수로 56, 뇌병원 3층 건강관리센터	1544-9004(내선 2)	26년2월
17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33	032-836-1731	즉시
18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032-500-0266, 0265	즉시
19	인천적십자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032-899-4332~3	26년2월
20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032-290-3333	26년2월
21	광주보훈병원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062-602-6301	26년2월
22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042-280-8530, 8535	즉시
23	대전보훈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신탄진동)	042-939-0407	즉시
24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	042-670-5190	즉시
25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울산 동구 대학병원로 25	052-250-8343	즉시
26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울산	울산 중구 태화로 239	052-241-1471	즉시
27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울산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052-259-5237	즉시

연번	병 원 명	시도	주 소	전화번호	검사 가능 시기
28	엔케이세종병원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61	044-850-7888	즉시
29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1688-2118(내선2)	즉시
30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경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23	031-412-5390	즉시
31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032-621-5500	즉시
32	광명성애병원	경기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36	02-2680-7531	즉시
33	동수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285	즉시
34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031-820-3330	즉시
35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경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37번지	031-8041-3636	즉시
36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031-888-0777	2월
37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031-828-5162	즉시
38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기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	031-940-9109	즉시
39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경기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8	031-539-9334	즉시
40	성남시의료원	경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	031-738-7007	즉시
41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경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031-500-1182	즉시
42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	031-630-4259	즉시
43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효자동)	033-258-2313	즉시
44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 20(일산동)	033-741-1670	즉시
45	베스티안병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1로 191	043-904-8106	26년2월
46	효성병원(건강검진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4	043-540-6841	26년1월
47	천안충무병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	041-360-1178	즉시
48	아산충무병원	충남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381	041-336-6347	즉시
49	천안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041-570-7336	즉시
50	서산중앙병원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산업로 5	041-661-1055	즉시
51	서산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041-689-7166	즉시
52	홍성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176	즉시
53	공주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041-962-1232	즉시
54	보령아산병원	충남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136	041-930-5555	26년2월
55	백제병원	충남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14	041-730-8985	즉시

연번	병 원 명	시도	주 소	전화번호	검사 가능 시기
56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063-250-1295	26년3월
5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의료원로 27(지곡동 군산의료원)	063-472-5153	즉시
58	대자인병원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 3가)	063-250-9350	26년2월
59	목포시의료원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용해동)	061-260-6472	즉시
60	순천성가롤로병원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900-7100	26년2월
61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 김천제일병원	경북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1길 12	054-420-9478~9	즉시
62	동국대학교의과대학 경주병원	경북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	054-770-8491	26년2월
63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경북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3길 25	054-550-7760	즉시
64	의료법인 서명의료재단 세명종합병원	경북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08	053-819-8887~8	26년2월
65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공단동)	054-468-9767	즉시
66	의료법인 안동병원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앙실로 11	054-840-0551	26년2월
67	안동성소병원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99	054-850-8520	26년2월
68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271	26년2월
69	의료법인 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054-289-2056	26년2월
70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054-245-0551	즉시
71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사랑길 30	054-429-8585	즉시
72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중앙진료동1층 직업환경의학과	055-360-1527	즉시
73	진주 한일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055-750-1325	즉시
74	서귀포의료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064-730-3461	26년2월
75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15(아라일동)	064-717-1608	즉시
76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91	064-786-7282	즉시
77	혜인의료재단 제주 한국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064-750-0701	26년2월
78	제주한라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064-740-5359	즉시
79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2층 건강증진센터	055-214-2050	즉시
80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1층 건강증진센터	055-249-1234	즉시
81	(의)한마음국제의료재단 창원한마음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동로57번길8 창원한마음병원 2층 국가검진센터	055-225-1325	26년2월
82	창원파티마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지하 1층 직업환경의학센터	055-270-1800	즉시
83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055-280-0397	즉시

참고 5-1 소방공무원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안내

□ 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 검사 가능 병원: 5개소

연번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	경찰병원(국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02-3400-1269
2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051-240-7320
3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114
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길 82	031-787-2114
5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20	055-360-1255

- **색각 이상자의 경우,** 위 병원에서 색각경검사(일명 아노말로스코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지정 병원(83개소)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또한, **위에 명시한 의료기관 외에 색각경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색각 관련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정기준

1색각(적색)			2색각(녹색)			3색각(청색)			색맹
약도	중도	강도	약도	중도	강도	약도	중도	강도	
O	불합격	불합격	O	O	O	O	O	O	불합격

↳ 색맹(녹색맹 포함)은 모두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

참고 5-2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중 마약류 정밀검사 안내

□ **마약류 정밀검사 시행안내**

- 소방공무원의 신체검사 항목 중 약물검사(마약 6종)가 강화됨에 따라 마약 복용이 금지되므로, 소방청장은 채용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마약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채용 신체검사간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서(붙임2)를 신체검사 시 작성해야 하며 동의를 거부하게 될 경우 약물검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신체검사 판정결과 판정보류로 처리되어 신체검사에 불합격 처리되게 됩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별표 7 관련, **필로폰(MA), 대마(THC), 케타민(Ketamine), 엑스터시(MDMA), 코카인(COC), 아편(OPI, 모르핀)**의 복용은 금지됩니다.
- 마약류 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 **정밀검사 대상자**

- 마약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응시자의 소변을 간이검사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

□ **정밀검사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는 곧바로 병원 또는 임상검사 전문기관에서 간이검사가 실시되며, 간이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정밀검사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통보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방청장 등 시험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정밀검사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 금지약물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병원 **신체 검사 시 정밀 마약검사 의뢰에 동의**하여야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후보자 등록 등 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밀 마약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으나, 응시자가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면책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붙임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서

<병원 작성 항목: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서>

의뢰기관명		수검자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 여 □
요양기관번호		Chart No.		과명/병동		검체 채취 담당	(서명)
소변 채취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			담당의사	(서명) ☎		
검사의뢰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						

마약류 6종 간이검사 결과(양성 약물에 체크)

□ **필로폰**(메스암페타민) □ **엑스터시**(MDMA) □ **대마** □ **코카인**(벤조일렉고닌) □ **케타민** □ **아편**(모르핀)

소변 검체 채취방법	• 멸균된 깨끗한 plastic container (ex: 15 mL conical tube)에 보존제 없이 5~10mL 이상 채뇨 • 수검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을 정확히 기재 • 채뇨 시 희석 또는 불순물을 첨가하지 않는지 확인 • **정밀검사를 위한 검체는 1차 간이검사(선별검사)에서 양성인 검체를 그대로 의뢰**
임상검사 전문기관	※ 임상검사 전문기관의 기관명,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요양기관번호 기재

<수검자(응시자) 작성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병원에서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소방청, 응시 시도 소방본부 및 마약 정밀검사 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구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응시 시도본부, 응시번호	채용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1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구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이용기간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채용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1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구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민감정보	채용 신체검사 결과(마약검사 결과 포함)	채용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1년**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기관	제공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마약 정밀검사 기관,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수사기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응시 시도 소방본부, 응시번호, 신체검사 결과(마약검사 결과 포함)	채용 신체검사(마약검사 포함), 신체검사 합격여부 판단, 수사기관 제공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검자(응시자) 작성 항목: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 동의서>

상기 마약류 6종에 대한 간이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정밀검사 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되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밀 마약검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신체검사 판정결과 '판정보류'로 처리되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되게 됩니다.** 정밀검사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비용은 신청자(응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마약 정밀검사 의뢰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검자(응시자) 작성 항목>

20 . . .

응시 시도 소방본부: **응시번호:** **성명:** (서명)